

【발표논문 7】

일본의 근세화와 토지·상업·군사

마키하라 시게유키 (牧原 成征, 동경대학)

번역: 홍성민(洪性珉, 와세다대학)

시작하며

본 보고에 주어진 과제는 임진왜란(일본명: 분로쿠·케이초의 역 文祿・慶長の役)이 일본 국내의 경제·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논하는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일찍이 ‘대륙 침입(唐入り)’을 표방하였고, 이에 따라 지배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대륙 침입은 도요토미 정권 그 자체의 성격과 따로 떼어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거대한 은 수요와 일본의 은 증산에 의해 국제교역 붐이 일어났다. 도요토미 정권과 만주족의 청조는 이를 기반으로 성립하여 중화를 정복하려고 한 신흥 상업-군사세력의 하나로 평가된다.¹ 한편, 일본사에서도 최근 20년 간 동아시아의 움직임을 시야에 넣은 화폐사 등이 크게 진전되었지만, 도요토미 정권은 고쿠다카 제도(石高制)라는 토지제도,² 무라우케 제도(村請制)³를 통한 쌀의 연공수취(年貢收取)를 기반으로 한 이른바 농본주의적인 국가체제를 수립하였다는 전통적인 견해도 강고하다.⁴ 본 보고에서는 우선 이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도요토미 정권의 ‘대륙 침입’ 구상은 그 때 그 때 변화하였고, 조선 침략은 최초에는 순조롭게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났다. 침략 전쟁은 최종적으로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인해 끝났지만, 그 뒤에도 도요토미 정권은 존속하였고, 세키가하라(關ヶ原) 전투 등을 거쳐서 도쿠가와 정권으로 계승 혹은 전환을 맞이한다. 도요토미 정권이 대륙침공을 위해서 구축한 지배체제·동원체제는 출병이 실패한 뒤, 도쿠가와 막번체제(幕藩體制)에 어떻게 계승되었고 어떻게 전환하였는가? 그 과정을 ‘봉공인(奉公人)’⁵ 문제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것을 본 보고의 두 번째 과제로 삼고자 한다.

¹ 岸本美緒, 「東アジア・東南アジア 伝統社會の形成」, 『岩波講座 世界歴史 13』, 岩波書店, 1998.

² 역주: 토지 생산력을 쌀로 환산하는 제도이다.

³ 역주: 연공과 부역의 상납, 토지와 인민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촌락의 대표자에게 위임하여 청부하는 방식이다.

⁴ 岸本, 앞의 논문에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평가를 하였지만, 두 견해 간의 관계는 다루지 않았다.

⁵ 역주: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고용살이를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1. 도요토미 정권의 재정 - 공조미(貢租米)와 금은 화폐의 연관 구조

도요토미 정권의 경제·재정기반을 고찰할 때 이용하는 사료가 『大日本租稅志』(大藏省租稅局)에 실린 「慶長三年藏納目錄」이다. 아래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도요토미 정권의 재정 특징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하고자 한다.

히데요시가 사망한 1598년(慶長 3)에 전국의 고쿠다카(石高) 약 1850만 석 중에서 도요토미 정권의 직할령[藏入地]은 222만 석 정도로 추산된다.⁶ 이에 대해 금·은광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運上]이 금 3400매 미만과 은 79415매 미만이고, 잡세 명목의 세금[諸役運上]이 금 1000매 정도와 은 13950매로, 합계 금 4400매 미만과 은 93361매 여(餘)이다.⁷ 직할지 222만 석의 토지세[物成]는 세율 50%로 치면 110만 석 정도일 것이다. 비축미 환금 가격은 기나이 주변 지역[畿内近國]에서 금 1매 = 40석 정도로,⁸ 당시 금 1매 = 은 10매였기 때문에, 금은 수입은 쌀 55만 석 정도에 해당한다. 도요토미 정권 말기의 경상수입은 금은광·제역 세금[諸役運上]이 연공수입의 50% 정도였다. 이를 확인한 뒤에 아래에서 각각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직할령[藏入地] · 연공 수입 우선 직할령은 전국에 배치하면서도 기나이 주변 지역[畿内近國]과 조선출병의 병참기지인 북규슈에 집중하였고, 다이묘(大名)와 현지의 유력자들을 다이칸(代官)으로 임명하여 관리하게 하였다. 다이칸은 직할령의 마을로부터 연공 등을 주로 쌀, 일부는 콩(대두)로 거두어들였고, 정권의 지시에 따라 현물로 바치거나 교토(京都) 등지로 보내어 지정된 가격으로 환금(換金)하여 바쳤다. 도호쿠(東北)의 원격지의 경우, 환금 가격이 금 1매 = 240석 등으로 매우 낮게 설정되었다.

금·은광 두 번째로 금·은광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도 역시 다이묘와 다이칸·상인들에게 납입을 담당하게 하였다.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의 부하로 있었던 하시바 히데요시(羽柴秀吉, 후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80년(天正 8)무렵에는 다지마(但馬) 지역을 지배하에 두어서 노부나가로부터 이쿠노(生野) 은광을 하사받자, 다이칸을 두고 상납은[上納銀](=공용은; 公用銀)을 바치게 하였다.⁹ 이후 히데요시 직할 은광으로 1598년에는 어마어마한 은 헌납액(6.2만 매 여)을 자랑하였다. 은 9천 매 여의 세금을 부과받은 이나바(因幡) 은광도 히데요시의 심복 미야베 케이준(宮部 繼潤) 밑에서 1593년(文祿 2)에 개발되었다고 여겨지는데, 거의 히데요시 직할이었던 듯 하다(「稻場民談記」).

한편, 이쿠노 은광에 필적하는 거대 은광으로 알려진 이와미 은광[石見銀山]은 일관되게

⁶ 山口啓二, 『山口啓二著作集 第二卷 幕藩制社會の成立』, 校倉書房, 2008, 51-52쪽.

⁷ 금·은 1매 = 10냥, 금 1냥 = 4.4문[匁](165g), 은 1냥 = 4.3문(161.25g), 1문 = 3.75그램.

⁸ 脇田修, 『近世封建社會の經濟構造』, 御茶の水書房, 1963년, 30-31쪽.

⁹ 小葉田淳, 『日本鑛山史の研究』, 岩波書店, 1968.

모리 씨(毛利氏)의 지배 하에 놓였다. 모리 씨는 1581년(天正 9)에 연간 은 3652 매의 수입을 이와미 은광에서 얻었다(『毛利家文書』三四六號). 조선 출병 시기에는 할당 세액[納所高]이 1만 매,¹⁰ 1598년(慶長 3)에는 2.2만 매, 다음 해는 3만 매로 정하였지만 미납이 발생하여 그 다음 해(1600)는 2.3만 매로 정하였다.¹¹ 그 중 은채굴에 관한 역(役)이 1.4만 매 여로 이 밖에 약 9천 매는 은광 마을[銀山町]이나 유노즈(溫泉津) 지역으로 보내는 유통과세(영업세·통과세[關稅])였다. 은 2.3만 매는 당시의 직할령 11만 석 여 수입의 2.5배 이상에 해당한다고 추계된다.¹² 도요토미 정권보다도 훨씬 은광 수입, 유통 과세의 의존도가 높았다.

게이초 3년 장납목록(慶長三年藏納目録)으로 돌아가면, 「주고쿠(中國)의 여러 은광」에서 은 4869매의 세금을 야나기사와 겐모쓰(柳澤 監物)가 담당하였다. 이는 이와미 은광에서 얻은 세수입이 아니라 1594년(文祿 3)에 모리 씨가 히데요시로부터, 사키 은광[先銀山] (이와미 은광 등) 이외의 새 은광에 대한 세금 헌납을 명한 것이다.¹³ 같은 해, 도요토미 정권은 탄약의 원재료인 납과 연초를 조달하기 위해서 나가사키(長崎)에 은을 보내야 했는데, 이와미로 비축미를 보내서 은으로 바꾸었다(「駒井日記」). 이 임진왜란 후의 휴전기에 도요토미 정권은 ‘시국[時節柄]’을 강조하여 다이묘 영지를 포함한 각지에서 광산을 적극적으로 발견, 개발하기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¹⁴ 정권이 관여하여 각지에서 토지조사[檢地]가 널리 시행된 시점도 이 시기이다. 대외전쟁을 계기로 집중화가 진행되었으니, 장납목록(藏納目録)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금은 화폐 세 번째로 장납목록에서 제역 세금[諸役運上]은 대부분이 고토의 판료[後藤判料](금 1000매)·조제의 좌중[常是座中]이 헌납한 은(1만 매)이다. 히데요시는 1594년(文祿 3) 4월에 ‘오사카 은 후키토모(大坂銀ふきとも)’를 ‘조제(常是)’라는 명칭의 동업조합[座]으로 정하였다(「駒井日記」). 유통이 있었는지, 정권이 소유한 회취은(灰吹銀)을 정련시키고 품위·규격이 일정한 은을 주조하게 하여, 그 차액·취임(吹賃)에서 세금을 내게 하였다고 보인다. 다음 해에는 고토 토쿠조(後藤 徳乘) 밑에서 금자취(金子吹) 27명을 부속시켰다. 그들이 만든 금화(大判, 小判도 포함?)를 고토에게 검정시켜서 오동나무의 극인(極印)을 찍거나 묵서(墨書)를 해서 판료(判料) 수취를 인정하였고, 그 일부를 세금으로 바치게 하였다고 생각한다.¹⁵ 이들은 후대의 긴자(銀座), 긴자(銀座)에 해당한다. 각지에서 다양한 금화, 은화를 주조하는 상황 속에서 중앙정권으로서 검정·보증업자를 하나로 공인하였고, 특정한 금은화폐를 공인하였다.

그런데 중세 일본에서는 중국산 동전이 화폐로서 이용되었지만, 15세기 후반에는 악전(惡錢)이 증가하여 전화(錢貨) 간의 가치에도 차이가 벌어져서 유통도 불안정해졌다. 한편,

¹⁰ 本多博之, 『天下統一とシルバーラッシュ』, 吉川弘文館, 2015, 176.

¹¹ 이상, 村上直 의 編, 『江戸幕府石見銀山史料』, 雄山閣, 1978, 70-81 쪽.

¹² 秋山伸隆, 「豊臣期における石見銀山支配」, 『龍谷史壇』 132, 2010.

¹³ 秋山, 앞의 논문.

¹⁴ 小葉田, 앞의 책; 本多, 앞의 책.

¹⁵ 小葉田淳, 『日本の貨幣』, 至文堂, 1966; 藤井讓治, 「近世貨幣論」, 『岩波講座 日本歴史 第11巻 近世2』, 岩波書店, 2014; 本多, 앞의 책을 참고하였다.

1530년대까지 회취법(灰吹法)¹⁶이 도입되어 일본에서 은이 증산되자, 중국에서는 재정상의 이유로 거대한 은 수요가 생겨났기 때문에, 1540년대에는 은이 무역 통화(通貨)로서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일본에는 생사(生糸), 다기·도자기, 연초(煙硝), 금 등을 수입하였다. 1570년대에는 은이 금과 함께 일본 국내에서도 통화로서 유통되었다. 이제껏 동전이 담당하였던 기능을 은과 일차적인 쌀이 대체하였다.¹⁷ 다만 금은의 통용은 도시와 그 주변이 중심이었고, 이 단계에서는 지방과 농촌[在方]까지는 퍼지지 않아서, 중국처럼 토지소유자로부터 직접 은으로 납세하게 하는 제도를 채용하는 조건은 형성되지 않았다.

이처럼 도요토미 정권은 기나이 주변 지역[畿内近國]의 거대한 쌀 생산에서 취하는 연공을 재정의 최대 재원으로 하여, 이를 군대의 병량과 노동력의 값(미곡)으로 치르고 남은 부분을 도시 등의 시장에서 금은으로 바꾸어서 값을 치르고 비축하였다. 또한 이쿠노를 비롯한 은광의 금은 생산에서 얻은 세금을 두 번째 재원으로 삼았으니, 또한 금은을 화폐로 제조·검정하게 하였다. 히데요시는 일찍부터 기나이 주변 지역[畿内近國]에서 이 수입원들과 그 연관성에 주목하였고, 토지조사에 의한 쌀 연공수취, 도시의 건설·번영, 광산의 개발, 금은의 통용을 더욱 추진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금은이 채굴되어 가치를 가지게 된 이유는 국내·역내에서 농업(특히 주곡[主穀])생산·유통이 어느 정도 성숙하였기 때문이다.¹⁸ 역으로 많은 쌀이 생산되어 정권이 쌀 연공을 아무리 수취·집중시킬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금·은과 교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비축할 수 없다면 그 가치는 반감된다. 히데요시는 1586년(天正 14)초두에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 家康)를 공격할 의사를 나타냈을 때, 병참능력을 선전하고 군대에게는 병량을 지급하며 시코쿠(四國)·규슈(西國)의 군대의 뭇은 배로 수송하고, 미노, 오와리[濃尾] 지역의 군대에는 금은으로 지급한다고 서술하였다.¹⁹ 또한 임진왜란이 한창일 때, 각지로부터 영주 소유의 쌀·상인 소유의 쌀의 수송태세를 정비하고, 하카타(博多)의 쌀 가격을 기준으로 하카타와 나고야(名護屋)에서 이보다 비싼 가격의 은으로 쌀을 수매하기로 상인들에게 포고하였다(『淺野家文書』二六一號). 히데요시의 전국 통일도 조선출병도 쌀은 물론이거니와 금, 은을 충분히 사용하여 가능하였으니, 이는 국제적인 교통·교역으로 금은의 통용이 촉진된 결과이다.

무역이윤 장납목록으로 돌아가면, 네 번째로 사카이(堺)로부터 토지세[地子]와 여러 동업조합의 잡세[役錢]를 수취하였는데, 모두 합하여 은 1250 매(53 관 750 문)이다.²⁰ 문제는 무역에 의한 이윤인데, 이러한 임시 수입²¹은 장납목록에 기록되지 않았다. 선교사 사비에르는

¹⁶ 역주: 회취법이란 高爐 바닥에 재를 채우고 그 위에 금은 광석과 납을 얹어 풀무로 가열함으로써 납과 불순물은 녹아서 재에 흡수되게 하고 순수한 금·은만을 남기는 제련법이다. 이 기술의 계보에는 중국 전래설, 조선 경우 전래설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후자 쪽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¹⁷ 本多, 앞의 책.

¹⁸ 『當代記』1608년(慶長 13)4월 21일 조 뒤의 기사에서는 오슈[奥州] 남부에서 금이 나오자 금 채굴자들이 사도(佐渡) 지역에서 내려갔고, 더 멀리 마쓰마에(松前) 지역으로 내려가서 금광을 채굴하려고 하였지만, 마쓰마에 씨가 이 지역에는 쌀이 없기 때문에 기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허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¹⁹ 名古屋市博物館 編, 『豊臣秀吉文書集 三』, 吉川弘文館, 2017, 1835 號.

²⁰ 1579년(天正 7) 이전에 나가사키를 영유하였던 오무라 씨(大村氏)는 은납 토지세[地子銀]와 포르투갈 배에서 걷는 정박세를 합하여 연간 은 23~24 관의 항상적인 수입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武野要子, 『藩貿易史の研究』, ミネルヴァ書房, 1979, 46 쪽.

²¹ 이 밖에도 다이묘 들의 현상이 있었지만, 그 물량·액수의 집계는 불가능하다. 히데요시의 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방일(訪日) 초기에, “수도로부터 이들 간의 거리에 있는 일본의 주요 항구인 사카이에 (중략) 물질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관(商館)을 설치합시다. 왜냐하면 이 사카이는 일본에서도 가장 부유한 항구로, 여기에는 일본 국내의 은과 금 대부분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²² 라고 제안하였지만, 상관의 설치는 실현되지 않았다. 히데요시는 1587 년(天正 15), 사쓰마(薩摩)의 시마즈 씨(島津氏)를 공격하던 도중, 히고(肥後) 지역에서 포르투갈 사람을 접견하고는 포르투갈 배가 사카이 주변에 입항하기를 강력하게 원했다.²³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을까,²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가사키를 몰수하여 직할로 삼았다.

다음 해 여름, 나가사키로 포르투갈 배가 내항하자 고니시 류사(小西立佐)²⁵에게 은 2 천 관(4651 매) 이상을 준 뒤 파견하여서 대량의 생사를 우선적으로 매점하게 하였다. 이 거래가 끝나기까지는 다른 누군가가 포르투갈 사람과 거래하는 것을 금하였다.²⁶ 또한 이후에 사쓰마(薩摩)지역의 가타우라(片浦)에 흑선(포르투갈 배?)이 도착해서 실 무역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시마즈 씨가 히데요시에게 보고하자, 다음과 같이 지시를 내렸다. — 봉공에게 은 2 만 매를 준 뒤 파견하여서 합당한 가격을 매겨서 사들여라. 그 전에는 거래하지 말라. 만약 실이 남는다면 다른 상인들에게도 사들이게 하라. 또한 이후 배가 몇 척이나 오더라도 모두 사들여라. 이는 상거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으로 배가 더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함이다(『島津家文書』三八四). 아사오 나오히로(朝尾 直弘)가 지적하였듯이, 이윤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라쿠시·라쿠자 령[樂市·樂座令]과 같이 방문한 상인을 천하인(天下人)이 보호하고 은총을 내린다는 측면이 있었다.²⁷ 이 때문에 관세를 징수하지도 않았다.

정권이 사들인 생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정권 공인 하에서 히데요시의 아내(정실 네네)가 지은 실을 교토의 초닌(町人)에게 강매시켰음을 알 수 있다(足守木下家文書). 또한 1594·95 년(文祿 3·4)에는 필리핀에서 건너온 ‘루순 단지’를 정권이 독점적으로 사들여서 상인들에게 강매시켰다(『當代記』·組屋文書). 다만 도요토미 정권이 직접 무역에 관여할 수 있었던 시기는 규슈(九州) 평정 이후로 서일본의 다이묘들과 비교한다면 무역 자체에는 불리한 조건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도시 지세(地稅)·유통세의 면제 다섯 번째로 게이초 3 년 장납목록을 보더라도 도요토미 정권은 교토·오사카 등의 직할도시에서 토지세[地子]와 상업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일견 기이하게도 보이기 때문에, 도요토미 정권이 ‘상업’에 기반을 두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²² 『聖フランシスコ・ザビエル全書簡3』, 平凡社, 1994, 162-163 쪽. 1549 년 11 월 5 일자, 말라카의 돈 페드로 다 실바에게 보낸 편지.

²³ 岡本良知, 『十六世紀日歐交通史の研究』, 原書房, 1974 년 복각판(원판에 해당되는 증보판은 1942 년), 470-72 쪽.

²⁴ 高瀬弘一郎, 『キリシタン時代の文化と諸相』, 八木書店, 2001, 11-13 쪽.

²⁵ 고니시 유키나가의 아버지이다. 사카이 상인 출신으로 여겨지며, 히데요시의 사카이 부교 겸 감정두[界奉行兼勘定頭]라고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島津亮二, 『小西行長』, 八木書店, 2010, 7 쪽, 31-35 쪽).

²⁶ 岡本, 앞의 책, 488-89 쪽.

²⁷ 朝尾直弘, 『朝尾直弘著作集 第五卷 鎖國』, 岩波書店, 2005, 216-218 쪽.

라는 논점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는 오다·도요토미(특히 도요토미) 정권의 조카마치(城下町) 건설, 초년의 집단 거주 촉진을 위한 정책, 즉 라쿠시·라쿠자(즉, 임시 잡세[座公事] = 상업세 면제)와 지세 면제[地子免許]의 결과이다.²⁸ 히데요시는 1585년(天正 13)에는 교토 등지에서 임시잡세를 기본적으로 철회·부정하였고, 1591년(天正 19)에는 교토·오사카(大坂)·야마토코리야마(大和郡山)라는 직할 조카마치에서 거의 일제히 토지세를 면제하였다. 이들은 에도(江戸) 막부의 삼도(三都)²⁹ 지배에서도 계승되어, 상업세는 부분적으로 부과되기도 하였지만 지세 면제는 막말까지 유지되었다. 이는 영주·성주가 부과한 다양한 공적인 업무[御用]와 역에 종사하게 한 대가로 간주하였기 때문이지만, 그 뿐만 아니라 삼도의 초년은 정권과 영주층이 매각하는 연공미를 원격지에서 꽤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을 사실상 강제하였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 비싼 쌀값 지불의 대가로서 — 명확하게 이와 같이 인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 토지세가 계속 면제되었다고 이해하여서 이 일견 극단적인 우대책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처럼 도시[町方]와 지방[在方]을 구별·분리하여 최대 상품인 쌀을 지방의 백성에게 공급하게 하고, 그 상당 부분을 과대한 이윤을 취하여 초년에게 매각·환금한다는 농업과 상업(광공업) 간의 분업 편성이 중세³⁰와는 다른 근세 국가재정의 기본원리로서 정착하였다. 한편, 금은광의 세금과 무역이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격감하였고, 대신에 17세기 말 이후 금은화 발행이익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어갔다.

2. 병사의 동원과 고용노동의 전개

덴쇼(天正) 19년령 도요토미 정권이 대륙 침공을 목표로 구축한 지배체제·동원태세를 논할 때 반드시 언급하는 것이 1591년(天正 19) 8월의 히데요시 주인장(朱印狀)이다(『淺野家文書』二五八號 등). 이 사료는 일찍이 무사·백성·초년이라는 근세적인 신분을 정한 ‘신분법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다카기 쇼사쿠(高木 昭作)는 그 첫머리의 ‘봉공인’은 무사를 가리키지 않고 무사의 종자(從者)를 의미하며, 이는 조선 출병을 목표로 봉공인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으로 전시(戰時)의 시한입법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³¹

중세에는 봉공(奉公)/봉공인(奉公人)이란 조정이나 권문·무가를 섬기는 것 / 또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데, 주인을 섬기는 사용인은 ‘下人’, ‘下部’, ‘被官’ 등의 용어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에도시대에는 무가·공가(公家)·초년·백성을 막문하고, 주인을 섬기는데 일정 기간[年季] 동안 고용된 노동자를 널리 봉공인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 전환의 기점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법에 있다. 히데요시는 1585년(天正 13)에 지배 영역 전체에 영지 개편을 단행하였고, 다음 해에는 정권의 기본법을 정하였지만(近江水口加藤家文書 등), 이러한

²⁸ 牧原成征, 「近世的社會秩序の形成」, 『日本史研究』 644, 2016.

²⁹ 역주: 도쿄, 교토, 오사카를 가리킴.

³⁰ 무로마치 막부의 재정은 단전(段錢)·동별전(棟別錢), 무역 이윤, 교토의 토창역(土倉役)·주옥역(酒屋役) 등에 의존하였다.

³¹ 高木昭作, 「いわれる身分法令と「一季居」禁令」, 『日本近世國家史の研究』, 岩波書店, 1990년(1984년 初出).

법령에서는 규닌(給人, 상급가신)을 섬기는 시종[侍 = 若黨]과 중간급 하인[中間] · 하인[小者]을 ‘봉공인’으로 불렀고,³² 품격 있는 호칭을 부여하여 백성들과 구별하였다.

게다가 조선 출병을 앞둔 덴쇼 19 년령에서는 이하의 세 가지를 명하였다. ①지난 7 월의 오슈(奥州) 출병 이후에 봉공인이 새롭게 초닌·백성이 되었다면, 고을[町]과 마을의 책임으로 바꾸고, (그를) 두어서는 안된다. ②농촌의 백성들이 논밭을 버리고 장사나 임금노동[賃仕事]을 했을 경우, 그 당사자는 물론 그가 소속한 마을 전체를 징계한다. 봉공도 하지 않고 전답도 경작하지 않는 자는 규닌·다이칸으로 임명해서 두어서는 안된다. ③봉공인으로 주인에게 사전의 양해 없이 그만둔 자는 고용해서는 안된다. 이전 주인에게 돌려보내도록 하라. ③은 이전에도 많은 다이묘·영주가 취한 법이었는데, 보증인[請人]을 세우게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엄벌규정을 두었다. 또한 교토에서는 봉공인·백성을 숨겨 두어서는 안된다는 뜻의 보증서[請狀]를 고을[町]이 제출하도록 하였다(大中院文書). 보증인·보증서는 이후 인구 이동에 관한 법규제의 기본 수단이 된다.

관백(關白)을 물려받은 도요토미 히데쓰구(豊臣 秀次)는 다음 해인 1592 년 정월에 봉공인들의 결락 금지를 엄명하는 주인장(朱印狀)을 공포하였다(『淺野家文書』二六〇號 등). 그 첫머리에 “대륙 침략 시에 진중에 있던 중에(唐入に就いて御在陣中)”라고 하였기 때문에, 다카기 쇼사쿠는 이 법이 시한입법으로 덴쇼 19 년 령도 동일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다만 히데요시가 전쟁 종결의 기한을 정하지도 않았고 ‘시한’이라는 표현에도 어폐가 있다. 조선 출병 무렵에 봉공인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법’으로 보아야겠다. 다만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봉공인이 초닌·백성이 된다’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봉공인·백성·초닌을 구별하였음을 전제로 공포하였다. 그 배경에는 전국 통일의 완료와 전국적인 토지조사(檢地), 고쿠다카(石高)의 산정(御前帳徴收), 곧 있어서 이루어지는 교토·오사카·야마토코리야마의 지세 면제 = 도시와 지방의 분리가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지금까지의 히데요시 신분정책의 집대성이라고 일컬어지며, 덴쇼 19 년령은 그 일환이기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³³

인원 동원과 약탈 봉공인들은(그 지방자도 포함) 특별히 대외전쟁에 반드시 나아가서 종군하지도 않았고, 히데쓰구 령(秀次令)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그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제법령에 의해 다이묘·상급가신[給人]의 봉공인 확보라는 권한을 부여 받아서, 고을[町]과 마을을 기반으로 한 지배체제는 강화되었다. 한편, 정권·다이묘와 민중 사이의 모순도 심화되었다. 봉공인이라고 하여도 실체는 농민·초닌과 유사한 면도 많아서 특히 주력인 규슈·주고쿠·시코쿠의 여러 다이묘는 다수의 백성을 군진의 노역자[陣夫]·인부로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1596 년(文祿 5) 12 월에 시마즈 가문에서는 정유재란을 맞이하여 군역 인원수 등의 추산치를 작성하였지만(『島津家文書』九六四號), 여기서는 350 기(騎) 외에

³² 이러한 호칭법이 이전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³³ 牧原成征, 「兵農分離と石高制」, 『岩波講座 日本歴史 第10卷 近世1』, 岩波書店, 2014.

인원수가 15097 명으로 되었는데, 후자 가운데 하급 사무라이 집단에게는 1 명에 2~3 명 씩 총계 1900 명의 인부[夫丸]가 부속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직할령에서 차출할 인부가 2000 명, 노꾼[加子]이 2000 명으로 계산되었다(모두 총 인원수에 포함됨). 히데쓰구 령에서는 봉공인에 더하여 “인부 이하에 이르기까지” 결락을 금지하였고, 또한 군진으로 징발된 백성의 논밭을 소속된 마을에게 책임지고 경작시켰다. 그 뿐만 아니라 어부들도 광범위하게 노꾼으로 동원되었으니, 해당 지역의 생산을 황폐화시켰다. 영주의 지역성도 여전히 강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중한 동원태세로 인해 오히려 마을의 상급가신[給人]과 봉공인이 확대된 측면도 있었다.³⁴

조선 출병에서 백성의 약탈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겠다. 전국시대의 전쟁에서는 무사와 잡병(히데요시가 말한 봉공인을 포함함)에 의한 물자만이 아니라 백성의 약탈도 널리 자행되었다. 약탈된 백성들은 사노비[譜代下人]·노동력으로서 소유 대상이 되었고, 또한 매매되었다. 전국시대 다이묘는 아군이 된 특정한 세력이나 지역에 신청을 접수해서 ‘금제(禁制)’를 발령하여, 아군의 공격이나 약탈 등을 금지하였다. 히데요시는 규슈 정벌 시부터 한 지역[一國]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금령 및 백성의 귀환을 명하는 법령을 발표하였고, 광역적으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였으며, 정주와 경작을 명하였고, 백성의 약탈, 인신매매를 금지하였다.³⁵ 이들 법령이 이윽고 전국으로 확대되었지만, 관철되지는 않았다. 명을 목표로 한 임진왜란에서는 ‘고려국(高麗國)’을 대상 지역[所付]으로 한 히데요시의 금령이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들에게 전달되었지만, 실제로는 전투의 전개와 함께 백성의 약탈도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정유재란에서는 조선 전라도를 무력으로 정복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학살이나 백성의 약탈이 격심하게 이루어졌다. 다이묘 들의 의도는 조선에서 약탈한 사람들을 일본에 보내어 경작자로 삼고, 일본의 백성을 병사로서 동원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된다.³⁶

도요토미에서 도쿠가와로 그럼 히데요시가 대륙침공을 목표로 구축하였던 동원태세는 침략전쟁이 끝난 뒤 도쿠가와 정권으로 계승되지 않았던 것일까? 혹은 도요토미 정권의 지배체제는 어떻게 도쿠가와 정권으로 계승되었던 것일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00 년 세키가하라 전투 후의 논공행상에서 사실상 영지 하사[領地宛行]를 대규모로 실시하였는데, 여러 다이묘 영지의 고쿠다카(石高)를 파악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다이묘 들의 중주 가문인 도요토미 히데요리(豊臣 秀頼)가 오사카 성에서 아직 존속하였기 때문에, 그의 존재·영향력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 교토·후시미(伏見)·사카이·나라(奈良)·나가사키 및 오사카 성 주변의 영지 이외의 도요토미 정권 직할령, 주요 금은광을 입수하였고, 외교·무역권도 장악하였다. 또한 여러 다이묘에게 부역[普請役]을 부과하여 후시미 성(伏見城)·니조 성(二條城)·에도 성(江戸城)·스푸 성(駿府城)·나고야

³⁴ 稻葉繼陽, 「兵農分離と侵略動員」, 『日本近世社會形成史論』, 校倉書房, 2009 년(2003 년 初出).

³⁵ 高木昭作, 「亂世」, 『歴史學研究』 574, 1987; 小林清治, 『秀吉權力の形成』, 東京大學出版會, 1994 年; 藤木久志, 『雜兵たちの戰場』, 朝日新聞社, 1995.

³⁶ 『朝鮮王朝實錄』 宣祖三十年 十月 庚申條. 조선 포로가 된 가토 기요마사의 신하 후쿠다 간스케(福田勘介)의 공술.

성(名古屋城) 등을 조영하였다. 1603 년에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에 임관하였고, 1605 년에는 장군직을 아들 히데타다(秀忠)에게 물려주었다. 그 사이 여러 다이묘에게 각 마을의 고쿠다카(石高)를 기록한 향장(郷帳)과 국회도(國繪圖)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

한편 여러 다이묘는 조선 출병 시기의 동원태세에서 벗어났고,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에 영지가 이전[轉封]된 경우도 많았으나, 재정지출에 곤란해 하면서도 영지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도쿠가와 정권에 의한 오사카 포위망 형성과 더불어, 각지에서 각각 성과 조카마치의 형성을 추진하였다.³⁷

도쿠가와 씨의 봉공인(奉公人) 법제 도쿠가와 정권은 당시 여러 다이묘의 영지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법을 공포할 수는 없었다.³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도 막부의 봉공인 법제로서는 1610 년(慶長 15) 4 월 2 일자의 「定」 3 개조가 중요하다(『御當家令條』 『御制法』). ①무사들은 시종[侍 = 若黨]은 물론 중간급 하인[中間] · 하인[小者]에 이르기까지 ‘일시적 고용자[一季者]’를 일체 고용해서는 안된다. 봉공을 바라는 자는 일계(一季)를 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②신참자는 기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가급적 오랫동안 참고 견디면서 근무하라. 그 해의 급료[切米]를 받은 경우는 다음 해 여름까지는 근무하고 그 뒤에 사직을 신청하라. ③평시의 부역 · 출진 · 교토 상경[御上洛] 공양(御供) 등의 경우 (이하 ‘전시(戰時)’라고 하겠다)에는 퇴직을 신청해서는 안된다. 간토(關東) 안의 여러 봉공인(여기서는 도쿠가와 씨의 직참가신[直參家臣]³⁹)은 시정의 임금노동자(六尺; 로쿠샤쿠)를 일체 고용해서는 안된다.

이 법은 에도에서 히데타다(秀忠)를 보좌하는 원로(元老)[秀忠付年寄]가 연명하여 포고한 법으로 간주되는데, 도쿠가와 씨의 영지인 간토 지역의 무사(「諸奉公人」)와 시종[侍] · 중간급 하인 · 하인 간의 관계를 설정한 법이다. 백성 · 초년의 일시적인 고용을 금지하고, 신참자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서 가급적 인내하면서 봉공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였다. ‘봉공인’의 어법이 히데요시의 법과는 다르지만, 히데요시가 봉공인과 백성을 구별하였던 방침 자체는 계승하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실제로는 백성 · 초년에서 일시적으로 고용된 자가 상당한 정도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서는 봉공을 끝낸 자가 백성 · 초년이 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전시’에는 퇴직 신청[暇乞い] 자체를 금지하여 고용을 강제로 지속시키는 특별조치를 발동한다고 규정하였다.⁴⁰ 이는 이후에 에도 막부의 기본 방침이 된다.

그 전해인 1609 년(慶長 14) 정월 22 일자 「條々」 5 개조(『條令』)에서는 첫 번째 조목에서 ‘일시적인 고용은 엄격히 금지한다. 이전부터 상인이었던 자 이외는 봉공을 그만 둔 자 또는 백성이 행상(行商)이나 이발업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전부터 하고 있었던 자는

³⁷ 여러 다이묘의 도시·상업정책은 통일정권인 에도 막부와는 다른 면이 많은데, 상업세를 부과하거나 토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다.
³⁸ 藤井謙治, 「「法度」の支配」, 『日本の近世3 支配のしくみ』, 中央公論社, 1991.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처럼 여러 다이묘에게 일제히 주인장(朱印狀)·자필 문서[直書]를 보내는 경우도 없었다.

³⁹ 초기 에도 막부 법령에서는 ‘봉공인’이 무사의 신분[士分]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⁴⁰ 오사카 겨울의 진 시기에 히데타다를 보좌하는 원로가 공포하였다고 보이는 1614 년(慶長 19) 10 월의 「定」(『條令』)에서는 시종[若黨]·하인·인부의 결락을 엄급하고, 숙소[宿]와 마을의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군진에서 돌아올 때에는 증명서를 지참하도록 명하였는데, 히데쓰구 령과 유사하다.

마치부교(町奉行)⁴¹의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라'라고 규정하고, 이하 에도의 치안에 관한 무사층의 금지사항을 열거하였다. 역시 히데타다를 보좌하는 원로가 하타모토(旗本)·고케닌(御家人)를 대상으로 제정한 법령으로, 에도의 거리에도 방문을 게시하였고, 참고하라는 뜻으로 다이묘에게도 전달되었다(上杉年譜)고 생각된다.⁴² 첫 번째 조목은 히데요시의 덴쇼(天正) 19년령의 두 번째 조목을 계승하였는데, 마치부교에 의한 증명서 발행을 규정하여,⁴³ 에도의 치안유지에만 관련된 법으로 바뀌었다.

단기 봉공인 고용관행 중세 말에는 일시[一季]적인 봉공 계약 관행이 이미 존재하였다. 사료상 빠른 예는 아와(阿波) 지역 미요시 가문(三好家)의 충신으로 기나이에도 오랫동안 출진하였던 시노하라 나가후사(篠原 長房)가 1560년대 무렵에 제정한 분국법(分國法)「新加制式」의 제 13 조인 「一季奉公輩事」이다. 여러 주인 밑을 몇 달 까지를 기한으로 전전하는 봉공인이 일반적으로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교토에서도 2월, 8월에 교대하는 임금노동자가 많이 존재하였다.⁴⁴

에도시대 초기의 일계봉공인(一季奉公人)에 관해서는 「元和年錄」의 1618년(元和 4)의 기사가 자주 인용된다. ①무사의 봉공인은 연계(年季)와는 별도로 일계(一季)란 2월, 8월로 1년에 두 차례 교대한다. 이게 부산스럽기 때문에, 근래부터 2월 2일로 교대일을 정하였다. 농촌은 2월에 경작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 봉공할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농촌으로 돌아와서 경작을 개시하기 위해 명하였다. ②그러나 무사의 봉공인들이 상당수 실직자가 되어 고향에 돌아가는 것도 꺼리고, 봉공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해서 탁발[勸進]하는 종교자로서 에도에 체류하여 치안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단속한다는 명령이 되었다. 무사가 고용한 중간급 하인[中間](이 될 수 있는 자)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내려졌다. 즉 에도에서 봉공인 실직자를 단속하고 봉공인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

①로 돌아가면, 이는 지금까지 2월, 8월 매년 두 차례의 교대를 빈번한 교대를 기피하는 고용주 = 무사 측의 형편을 고려하여 2월 한 차례로 한정시킨 조치였다. “연계와는 별도로 일계란 2월, 8월로 매년 두 차례 교대한다.”라는 표현에서 지금까지 일계란 기본적으로 반년을 의미하였을 가능성이 있겠다.⁴⁵ 또한 ‘근래[近頃]’, 즉 1618년(元和 4)보다 조금 앞서서 이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가 니시노토인 도키요시(西洞院 時慶)의 일기 『時慶記』 1610년(慶長 15)

⁴¹ 역주: 에도 시내의 행정, 사법, 경찰을 담당하였다.

⁴² 『大日本史料』第十二編之十一, 64-66 쪽을 참고고.

⁴³ 시기가 내려와서 1637년(寬永 14) 10월에 막부가 간토, 고신[關東甲信] 지역 영주에게 지시한 법령(『御當家令條』)에서는 마을[郷中]에서 봉공을 하거나 장사를 하러 떠날 경우, 새 거주지를 쇼야(庄屋)·오인조(五人組)에게 연락하도록 요구하였고, 백성의 상행위를 인정하였다. 한편 메이레키(明暦)의 대화재 이후에는 무가 봉공인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데, 에도에서 행상인에게 표찰을 교부하여서 취업 규제를 강화하였다.

⁴⁴ 1613년(慶長 18)에 교토 주변에서 기록한 수필 『寒川入道筆記』에는 “교토의 임금노동자라도 2월, 8월의 교대 철에 서로 모여서 ‘이전 계절에 그대는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묻는다”라고 하였다.

⁴⁵ 『言經卿記』 1594년(文祿 3) 11월 16일 조에서는 야마시마 토키쓰네(山科 言經)가 아와즈(粟津) 지역의 요지로(與二郎)에게 온 25문을 대어하였고 그 중에서 20문을 1년 3개월 동안 하인[小者]으로 연계봉공(年季奉公)하여서 상환하도록 하는 계약을 한 증명서가 있다. 여기서는 1년 3개월을 ‘二季半’으로 표기하였으니, 一季=반년이다. 1652년의 에도 마치부레[江戸町觸]에서는 ‘一季·半季에 주거를 교대하는 자’라고 표기하였으니, 一季=1년인 듯하다(『江戸町觸集成』 八四號).

2월 2일·5일 조가 주목된다. 교토 쇼시다이(京都所司代) 이타쿠라 가쓰시게(板倉 勝重)가 봉공인의 교대일을 이후로 2월 2일로 공식으로 정한다는 기사이다. 『時慶記』에서는 그 이전에는 2월 초~3월 초, 8월 초~9월 초의 교대 기사가 많다. 이 이타쿠라의 조치도 매년 두 차례의 교대를 한 차례로 바꾸었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반년 단위(=一季)의 교대를 부정하는 것이 되니, 일시적 고용의 금지라고 할 수 있는 방침이 에도의 방침을 따라서 1610년에 교토에서도 제정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이상으로 도쿠가와 정권은 2월·8월의 봉공인 교대 관행이 있는 가운데, 막신(幕臣)에 대해 백성·초년의 일시적인 봉공인 고용을 금지하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2월 한 차례의 교대로 한정하는 정책을 취하였다고 생각된다.

에도의 방문 게시[高札] 그럼 오사카의 진(大坂の陣)에서 도요토미 씨를 멸망시키고 히데타다로 세대교체를 한 뒤, 1616년(元和 2) 10월에 막부는 에도에서 다음과 같은 방문을 붙였다. 즉 각각의 무사들이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행위 금지, 인신매매 금지, 연계(年季)를 3년으로 한정, 흡연·담배 제작의 금지, 이 밖에 에도 거리의 치안에 관한 항목을 열거하였다. 게이초(慶長) 14년 령과 15년 령을 포함한 여러 법령을 통합한 내용이지만, 인신매매 금지, 3년계(年季) 제한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전국시대의 종결[元和偃武]을 실현시킨 히데타다 정권이 도요토미 정권의 인신매매 금령을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3년까지 연계제한을 둔 것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된다.⁴⁶

이후 이 법령을 1618년(元和 4), 19년, 1621년, 22년, 25년, 27년, … 으로 거의 매년,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다시 공포하였다. 이들 중에는 다이묘 가문의 사료에 기록된 법령도 있지만, 이는 본래 에도에서 게시한 방문[高札]이니 다이묘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당초는 다이묘의 영지와 가신(家中) 전체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은 아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실 1619년(元和 5)에 후쿠시마 마사노리(福島正則)의 히로시마 영지를 몰수하였을 때 공표한 히데타다 흑인장(秀忠黒印狀)에서는 “백성이 미납한 연공미의 채무 변제를 위해서, 혹은 일시적 고용으로 후쿠시마 가신(의 무사)에 봉공하고 있을 경우, 모두 (영지 몰수와 함께) 계약을 파기하니 그 곳에 머무르도록 하라”라고 명하였으니(『毛利家文書』一一六二), 후쿠시마 씨 가신이 백성을 일시적으로 고용한 경우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계봉공인의 공인 막부는 1636년(寬永 13)에 이르러서, 장군 이에미쓰(家光)의 닛코(日光) 참배를 앞두고, ‘일계거봉공인(一季居奉公人)’을 그 해는 그대로 계속해서 고용해야 한다고 명하고, 오메쓰케[大目付]⁴⁷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게 하였다(江戸幕府日記). 오메쓰케를 통해 여러 다이묘에게 전달하였다고 보아도 좋겠다. 이 때의 닛코 참배는 간에이(寬永) 년간의 대개축[大造替]이 끝난 뒤에 이루어진 대규모 참배로 공가·하타모토 직참(直參) 외에 도쿠가와

⁴⁶ 막신에게는 일계봉공인의 고용을 금지하였지만, 백성·초년의 장년계 봉공(長年季奉公)도 금지하였으니, 여기에는 모순되는 면도 있었다. 전자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머지않아 폐지되었고, 후자도 1627년(寬永 4)에는 10년계 제한(年季制限)으로 수정된다.

⁴⁷ 역주: 다이묘를 감찰하는 직무이다.

일족·후다이 다이묘(譜代大名),⁴⁸ 도자마 다이묘(外様大名)⁴⁹의 일부(동행 집단)를 거느리고 성대하게 치뤄졌다. 또한 전년에는 참근교대(參勤交代)를 무가의 여러 법도에 포함시켜서 제도화하였다. 구마모토(熊本)의 번주 호소카와 다다토시(細川 忠利)는 그 전 해에 봉공인의 부족, 임금 양등을 탄식하고, 참근교대는 2월 2일 교대 후에 봉공인을 확보하고 나서 3월에 적은 인원수로 에도에 상경[出府]하는 제도로 삼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을 막부의 최고 수뇌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밝혔다.⁵⁰ 시마바라(島原)·아마쿠사(天草)의 난이 한창인 1638년(寬永 15) 2월에도 막부는 작년부터 있는 일시적 고용자를 8월까지 그만두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다이묘에게 전달하였다(『細川家史料』四〇四三號).

이 시기 시모쓰케(下野) 지역의 영주 미나가와 다카쓰네(皆川 隆庸)가 가신 중에 일시적 고용자를 일체 고용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상신서(上申書)를 제출하였으니,⁵¹ 간토의 하타모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시적 고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한편 1627년(寬永 4)령(『御當家令條』)에 의하면, 금령을 위반한 고용주는 지위에 따라 벌금을 낼 뿐이었는데, 방문의 게시에서는 1661년(寬文元)까지 계속 금지시켰지만, 꼼꼼하게 단속하지는 않았다. 참근교대를 제도화하고 다이묘 통제를 강화한 결과, 오히려 다이묘의 일계봉공인 고용의 현실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하타모토·고케닌에 대한 일시적 고용의 금령도 이윽고 방기하기에 이른다.

이상을 간단하게 정리해 두자. ①적어도 교토·기나이 주변에서는 중세 말부터 무가·공가, 사원, 신사의 여러 권문이 고용한 하인(비숙련노동력)에 대해서 일시적, 단기 계약에 의한 노동시장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②히데요시는 무사의 종자를 ‘봉공인’으로 불러서 백성과 구별하였고, 방대한 상비군을 만들어냈다. 특히 침략전쟁기에는 병사와 종군노동력의 확보책을 강화하였지만, 이는 상급 가신[給人]과 재지사회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였다. ③도쿠가와 정권도 간토의 직참가신에 대해서는 당초 일계봉공인을 금지하고, 상비군이라는 명목을 관철시키려고 하였다. ④그러나 여러 다이묘는 일시적인 봉공인에게 의존하였고, 막부도 거대도시를 지배하여 다이묘를 거지반 에도에서 모여 살게 하는 과정에서 단기 봉공 관행이란 현실에 대응해 갔다. ‘평화’를 전제로 일상적으로는 백성이나 시정의 노동자를 고용하였고(傭兵), 전시(戰時)에만 그 고용을 강제적으로 지속하게 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이처럼 방대한 상비군이 창출되자, 평시가 되면 이를 ‘용병’이 대체하였고, 특수한 남자노동시장의 비약적인 확대를 낳았다. ‘병사’가 될 수 없었던 여성의 법적 지위는 낮았고, 노동력 수요도 부족하여서, 몸을 파는 관계가 잔존하였다. 일본 근세의 노동관행에는 도요토미 정권에 의한 상비군의 창설과 그 모순, 전쟁상태 하의 무가 봉공인의 신분보증 제도, 인신매매·장년계 봉공(長年季奉公)의 금지, 집권화와 분권화의 상극 등의 역사 과정이 깊고도

⁴⁸ 역주: 세키가하라 전투 전부터 도쿠가와 가문의 신임이 두터웠던 다이묘를 가리킨다.

⁴⁹ 역주: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도쿠가와 가문에 복종한 다이묘를 가리킨다.

⁵⁰ 『部分御舊記』所收, 寬永 11년 11월 18일자 永井尙清에게 보내는 書狀(『熊本縣史料 近世篇 第一』, 187-189쪽), 吉村豊雄, 「參勤交代の制度化についての一考察」, 『文學部論叢(熊本大學)』29, 1989은 이 제안이 장군 이에미쓰(家光)에게 계승되었고, 막부의 제도정책에 상당수 도입되었다고 하였다.

⁵¹ 高木, 앞의 책, 263-65쪽. 1633년(寬永 10)~1645년(正保 2)의 기록.

복잡하게 새겨져 있는 것이다.

맺으며

이에야스 정권이 도요토미 가문의 존재를 전제로 삼아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은 것에 비해, 이를 극복한 뒤의 히데타다 정권·이데미쓰 정권은 정권의 계승·다이묘 통제는 물론이고, 조정과의 관계조정, 대외관계의 조정 등을 큰 과제로 하였지만, 특히 기독교 신앙 금지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다.

1642년(寬永 19), 나가사키 히라도 초(平戸町)의 호적[人別帳]은 초년의 가족과 하인 한 명 한 명에 대하여 연령, 이름, 출생지, 나가사키로 이주한 해, 부모 등에 대해서 기록하였는데, 특히 고려인과 옛 기독교도로서 독실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자에 대해서는 친족을 조사하여 조직(組)에서 보증인을 세우게 하고 보증서를 받아 두었다.⁵² 한편 1649년(慶安 2) 오미(近江) 히코네 조카(彦根城下) 시모사카나야 초(下魚屋町)의 종문개장(宗門改帳)은 더욱 자세한 기재항목을 갖고 있지만, 기독교도 외에도 세키가하라 전투·오사카의 진에서 부대 대장의 자손, 고토케[御當家](이이 가문[井伊家]인가?)삼대 파문을 당한 자와 그 자손이 없음을 특별히 보증하게 하였다.⁵³ 이처럼 기독교 신앙 금지를 주안으로 하는 종문인별개제도(宗門人別改制度)가 정비되어 갔지만, 기독교도와 함께 세키가하라 전투·오사카의 진 때의 적측 대장이 반체제 분자로 간주되었고, 조선인이 감시가 필요한 인물이 된 예도 있다.

도요토미 정권은 “대륙 침략”의 기치를 내걸고, 이른바 적을 만들어서 권력을 집중해 나갔고, 공납제·영주제·위계질서를 재구축하였으며, 실제로 조선에 출병하였다. 그 실패 후, 도쿠가와 정권은 그 사이에 사람의 이동이라는 면에서도 유동성이 늘어난 사회상황을 맞이하여, 도요토미 가문의 부정, 기독교의 금지를 계기로 민중 한 명 한 명의 소속, 내력, 이동, 신앙까지 집단을 매개로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해 갔다.

⁵² 武野要子 校注, 「寬永十九年長崎平戸町人別生所札」, 『日本都市生活史料集成 六 港町篇1』, 學習研究社, 1975.

⁵³ 齋藤純, 「近世前期彦根城下町住民の來歴について(上)(下)」, 『專修人文論集』 55・57, 1994・95.